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54호 2011. 10. 4.(화)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1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2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3호(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4호(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5호(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6호(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7호(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35호(201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액 결정공시) ... 48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05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50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0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2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 동춘동 LNG기지 및 진입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송도동의 관할구역을 개정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로 변경 ○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에서 송도동의 관할구역을 “송도국제도시 전역” 에서 “송도동 전역” 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1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옥련동	옥련동 전역
선학동	선학동 전역
연수동	연수동 전역
청학동	청학동 전역
동춘동	동춘동 전역
송도동	송도동 전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 ----- ----- .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관할구역	명 칭	관할구역
옥련동	옥련동 전역	옥련동	현행과 같음
선학동	선학동 전역	선학동	현행과 같음
연수동	연수동 전역	연수동	현행과 같음
청학동	청학동 전역	청학동	현행과 같음
동춘동	동춘동 전역	동춘동	현행과 같음
송도동	<u>송도국제도시 전역</u>	송도동	<u>송도동 전역</u>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동춘동 LNG기지 및 진입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신지번 부여로 인해 동춘2동 및 송도동의 관할구역표를 개정</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제2조 관련) 개정</p> <p style="padding-left: 20px;">- 동춘2동 및 송도동의 관할구역표를 개정</p>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1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의 동춘2동란 및 송도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행정운영동	동장수	관 할 구 역
동춘2동	1	동춘동 916, 916-1~4, 927, 927-1, 928, 928-1, 929, 929-1, 930, 930-1~3, 931, 931-1~3, 932, 932-1~4, 933, 933-1~16, 934, 934-1~12, 935, 935-1~3, 936, 936-1~8, 937, 937-1~11, 941~943, 943-1~6, 944~946, 946-1~4, 947, 947-1~4, 948, 948-1~2, 951~952, 957~958, 958-1~4, 959, 959-1~5, 960-2, 960-4~6
송도동	1	송도동 1, 2-1~21, 3-1~65, 4-1~4, 5-1~9, 6-1~8, 7-1~71, 8-1~32, 9-1~51, 10-1~70, 11-1~58, 12-1~6, 13-1~19, 14, 15-1~16, 16-1~13, 17-1~8, 18-1~14, 19-1~12, 20-1~29, 21-1~75, 22-1~27, 23-1~9, 24-1~7, 25, 26-1~3, 27, 28-1~21, 29-1~22, 30-1~15, 31, 32-1~3, 33-1~2, 34~42, 42-1, 43~55, 55-1~2, 56~74, 74-1, 75~77, 77-1~3, 78~84, 84-1~2, 85, 85-1, 86~91, 352, 352-1~2, 353~358, 358-1, 359, 359-1~3, 360, 360-1, 361~370, 370-1, 371, 371-1,2, 372, 372-1, 2, 373, 373-1~14, 374~378, 378-1, 379~382, 382-1,2, 383, 383-1, 384, 384-1,2, 385, 386, 386-1~3, 387, 387-1, 388, 388-1~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행 운 영 동	동 장 수	관 할 구 역	행 운 영 동	동 장 수	관 할 구 역
옥련1동	1	(생략)	옥련1동	1	(현행과 같음)
옥련2동	1	(생략)	옥련2동	1	(현행과 같음)
선학동	1	(생략)	선학동	1	(현행과 같음)
연수1동	1	(생략)	연수1동	1	(현행과 같음)
연수2동	1	(생략)	연수2동	1	(현행과 같음)
연수3동	1	(생략)	연수3동	1	(현행과 같음)
청학동	1	(생략)	청학동	1	(현행과 같음)
동춘1동	1	(생략)	동춘1동	1	(현행과 같음)
동춘2동	1	동춘동 916, 916-1~4, 927, 927-1, 928, 928-1, 929, 929-1, 930, 930-1~3, 931, 931-1~3, 932, 932-1~4, 933, 933-1~16, 934, 934-1~12, 935, 935-1~3, 936, 936-1~8, 937, 937-1~11, 941~943, 943-1~6, 944~946, 946-1~4, 947, 947-1~4, 948, 948-1~2, 951~952, 957~958, 958-1~4, 959, 959-1~5, 960-2, 960-4~6, 962, 962-1~2, 963~964, 964-1, 965~967, 967-1, 968, 968-1~3, 969, 969-1, 970~979, 979-1, 980, 980-1, 981, 981-1~2, 982~985, 985-1, 986~987, 987-1~15, 988, 988-1~3, 989, 1118~1130	동춘2동	1	동춘동 916, 916-1~4, 927, 927-1, 928, 928-1, 929, 929-1, 930, 930-1~3, 931, 931-1~3, 932, 932-1~4, 933, 933-1~16, 934, 934-1~12, 935, 935-1~3, 936, 936-1~8, 937, 937-1~11, 941~943, 943-1~6, 944~946, 946-1~4, 947, 947-1~4, 948, 948-1~2, 951~952, 957~958, 958-1~4, 959, 959-1~5, 960-2, 960-4~6
동춘3동	1	(생략)	동춘3동	1	(현행과 같음)
송도동	1	송도동 1, 2-1~21, 3-1~65, 4-1~4, 5-1~9, 6-1~8, 7-1~71, 8-1~32, 9-1~51, 10-1~70, 11-1~58, 12-1~6, 13-1~19, 14, 15-1~16, 16-1~13, 17-1~8, 18-1~14, 19-1~12, 20-1~29, 21-1~75, 22-1~27, 23-1~9, 24-1~7, 25, 26-1~3, 27, 28-1~21, 29-1~22, 30-1~15, 31, 32-1~3, 33-1~2, 34~42, 42-1, 43~55, 55-1~2, 56~74, 74-1, 75 ~77, 77-1~3, 78~84, 84-1~2, 85, 85-1, 86~91	송도동	1	송도동 1, 2-1~21, 3-1~65, 4-1~4, 5-1~9, 6-1~8, 7-1~71, 8-1~32, 9-1~51, 10-1~70, 11-1~58, 12-1~6, 13-1~19, 14, 15-1~16, 16-1~13, 17-1~8, 18-1~14, 19-1~12, 20-1~29, 21-1~75, 22-1~27, 23-1~9, 24-1~7, 25, 26-1~3, 27, 28-1~21, 29-1~22, 30-1~15, 31, 32-1~3, 33-1~2, 34~42, 42-1, 43~55, 55-1~2, 56~74, 74-1, 75 ~77, 77-1~3, 78~84, 84-1~2, 85, 85-1, 86~91, 352, 352-1~2, 353~358, 358-1, 359, 359-1~3, 360, 360-1, 361~370, 370-1, 371, 371-1,2, 372, 372-1, 2, 373, 373-1 ~ 14, 374~378, 378-1, 379~382, 382-1,2, 383, 383-1, 384, 384-1,2, 385, 386, 386-1~3, 387, 387-1, 388, 388-1~3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 공제금액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p>○ 세목별 세액공제 순위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 - 시·구세의 경우 시세 먼저 세액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1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
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
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한다.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규정은 2011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한다.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	<p><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p> <p>○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적응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제3조)</p> <p>○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연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5조)</p> <p>○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12조)</p> <p>○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4조)</p>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제공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3.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다문화가족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활동 미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상위법령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 명시 ○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1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이적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인천광역시연수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확한 배출일시, 장소 등을 스티커판매소 및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8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3.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지정된 일시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5. 1호부터 4호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 배출일·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

별 배출요령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기준 및 수거물량, 대행구역, 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계약에 따른 기준 및 수거물량의 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환경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구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가격 또는 무게나 양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격에 의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 등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등으로 구분한다.

② 가정사업계용봉투에는 가정사업계폐기물을 담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으며, 그 외의 종량제 생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담아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④ 종량제 봉투 등의 규격·색상 및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 운영,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청소대행업체 등에 종량제 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공급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 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로 확인·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환불)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판매소에서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스티커 판매금액으로 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 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다른 법령·조례에 의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분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용 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폐기물 과태료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②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과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신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 예규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으로 한다. 단,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대형폐기물수수료(제2조, 제17조 관련)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가스렌지	높이 1m이상(동양매직 유형)	4,000
	높이 50cm미만(일반가스렌지)	2,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가 습 기	모든규격	2,000
기타(악기)	일반기타	2,000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3,000
김치냉장고	모든규격	6,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나무묶음	직경 100cm 미만	4,000
	직경 70cm 미만	3,000
	직경 40cm 미만	2,000
난방기구	스토브, 전기히터 - 대	4,000
	스토브, 전기히터 - 소	2,000
냉 장 고	500L 이상	10,000
	300L 이상	8,000
	300L 미만	6,000
	업소용(대형) -구 담당자와 통화 요망-	-
다 리 미	모든 규격	2,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대형패종시계	모든 규격	3,000
돛 자 리	길이 2.5m 이상	4,000
	길이 2.5m 미만	2,000
런닝머신	모 든 규 격	8,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믹서기(녹즙기)	모 든 규 격	2,000
문 갑	대(1m 이상)	5,000
	소(60cm 미만)	4,000
문 작	철 재	5,000
	목 재	4,000
물 탱 크	2.5 톤	50,000
	1.5 톤	30,000
바 독 판	대(두꺼운 판)	2,000
	소(얇은 판)	1,000
밥 상	대	4,000
	중	3,000
	소	2,000
비디오(VTR)	모 든 규 격	3,000
비키니 옷장	모 든 규 격	2,000
보 일 러	모든 규격	6,000
보 행 기	모 든 규 격	3,000
벽 시 계	대	2,000
	소	1,000
변 기	모 든 규 격	5,000
병 풍	모 든 규 격	5,000
빨간 고무통 (도라무통)	대	5,000
	중	3,000
	소	2,000
빨래 건조대	모 든 규 격	2,000
식기 건조기	모 든 규 격	3,000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식기 세척기	모 든 규 격	3,000
식 탁	6인용 이상	6,000
	6인용 미만	5,000
신 발 장	모 든 규 격	5,000
싱 크 대	대(1m 이상)	5,000
	소(1m 미만)	4,000
서 랫 장	4단이상(3단 양수포함)	5,000
	3단 미만	3,000
선 풍 기	모 든 규 격	3,000
수도 호수	10m당	2,000
세 면 기	대	6,000
	소	5,000
세 탁 기	8kg 이상	6,000
	8kg 미만	5,000
스 텐 드	모 든 규 격	2,000
스 피 커	대	4,000
	중	3,000
	소	2,000
	극소(컴퓨터책사용 스피커)	1,000
쇼 파	4인용 이상	10,000
	3인용	9,000
	2인용	7,000
	1인용	5,000
쌀 통	다용도(밥통 및 전자렌지 수납식)	4,000
	일반 규격	3,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새 장	대	3,000
	소	2,000
아이스 박스	대(길이 1m 이상)	4,000
	중(길이 1m 미만)	3,000
	소(길이 50cm 미만)	2,000
어 항	대(길이 2m 이상)	8,000
	중(길이 1.5m 미만)	5,000
	소(길이 1m 미만)	3,000
여행용 가방	모 든 규 격	3,000
오 디 오	대	5,000
	중	4,000
	소	3,000
오 르 간	모 든 규 격	5000
욕돌매트	2 인 용	10,000
	1 인 용	7,000
옷 걸 이	모 든 규 격	2,000
연 수 기	모 든 규 격	3,000
유 모 차	모 든 규 격	3,000
유 리	식탁용 및 책상 유리	3,000
욕 조	재 질 (돌)	10,000
	재 질(프라스틱)	5,000
액 자	대	5,000
	중	3,000
	소	2,000
에 어 컨	78평형 이상	10,000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에 어 컨	19평형 이상	7,000
	19평형 미만	5,000
의 자	바퀴달린 의자	4,000
	식탁의자 및 일반의자	3,000
	소형 의자(쪽의자)	2,000
자동 판매기	대	10,000
	소	8,000
자 석 요	2 인 용	10,000
	1 인 용	7,000
자 전 거	대(어른용)	5,000
	중(어린이용)	4,000
	소(유아용)	3,000
장 룡	90cm 1쪽(3자) 이상	9,000
	90cm 1쪽(3자) 미만	7,000
장 식 장 (차 단 스)	대(문짝 3개짜리)	7,000
	소	5,000
장 판	5m 이상	4,000
	5m 미만	3,000
전기장판	모 든 규 격	3,000
전기밥통	모 든 규 격	3,000
전신거울	모 든 규 격	3,000
전자레인지	모 든 규 격	3,000
전축케이스	모 든 규 격	3,000
전 화 기	모 든 규 격	2,000
정 수 기	대	5,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정 수 기	중	4,000
	소	3,000
재 봉 틀	대	3,000
족 욕 기	모 든 규 격	3,000
찬 장	대(길이 1m 이상)	4,000
	소(길이 1m 미만)	3,000
침 대	2인용(매트리스 2개짜리)	20,000
	1인용(매트리스 2개짜리)	17,000
	이 층 침 대	17,000
	퀵 사이즈	15,000
	2인용(매트리스 1개짜리)	12,000
	1인용(매트리스 1개짜리)	10,000
침대 매트리스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매트리스	7,000
침 대 머 리	모 든 규 격	3,000
침대 틀	2인용 틀	4,000
	1인용 틀	3,000
카 세 트	대(길이 40cm 이상)	3,000
	소(길이 30cm 미만)	2,000
카 펠 트	대(길이 2.5m 이상)	12,000
	중(길이 2.5m 미만)	7,000
	소(길이 1.5m 미만)	5,000
컴 퓨 터	모 니 터	3,000
	본 체	2,000
	자 판	1,000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컴퓨터 책상	모 든 규 격	4,000
캐비닛(철재)	모 든 규 격	5,000
캐비닛 (서랍식)	4 단 이 상	5,000
	3 단 이 하	4,000
탁 자	모 든 규 격	3,000
탈 수 기	모 든 규 격	5,000
텔레비전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텔레비전 받침대	모 든 규 격	3,000
토스트기	모 든 규 격	2,000
피 아 노	그랜드(대형)	12,000
	일 반 규 격	10,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프라이팬	대	2,000
	소	1,000
프린터기	모 든 규 격	2,000
항 아 리	대	5,000
	중	3,000
	소	2,000
행 거	모 든 규 격	3,000
화 장 대	영업용(미용실용)	10,000
	모 든 규 격	5,000

※ 위의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위의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용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제6조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종이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류)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외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유) ○기타 캔(부탄가스, 스프레이형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 등이 있는 것은 제거 -봉투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마대 등에 따로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함 ○페스티로폼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필름)류는 흘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배출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종류	품목	배출요령
6.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동 주민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7.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동 주민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제17조 관련)

연번	품명	규격	연번	품명	규격
1	가습기	높이 50cm미만	15	전화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50cm미만	16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	모든 규격	17	보온밥통(술)	모든 규격
4	다리미	모든 규격	18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풍기	모든 규격	19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스피커	높이 50cm미만	20	컴퓨터(본체, 모니터, 키보드)	모든 규격
7	공기청정기	높이 50cm미만	21	컴퓨터 오락기	모든 규격
8	청소기	모든 규격	22	노트북 컴퓨터	모든 규격
9	정수기	높이 50cm미만	23	모뎀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4	스캐너	모든 규격
11	가스오븐렌지	높이 50cm미만	25	프린터기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6	복합기	모든 규격
13	전기포트	모든 규격	27	팩시밀리	모든 규격
14	VTR/DVD	모든 규격	28	전자시계	모든 규격

[별표 4]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산정기준, 판매수수료(제17조 관련)

〈 일반용 봉투 〉

1. 봉투가격산정기준

$$\text{봉투가격} = \text{① 봉투단가(ℓ 당)} \times \text{② 수수료자립도(0.55 \sim 1)} \times \text{③ 봉투규격(ℓ)}$$

$$+ \text{④ 판매수수료} + \text{⑤ 봉투제작비}$$

【주】

① 봉투단가(ℓ 당) =

$$\frac{\text{㉑ 수집·운반·처리비(원)}}{\text{㉒ 연간 처리량(톤)}} \div \text{㉓ 부피환산계수(2,500)}$$

㉑ 수집·운반·처리비(원) = 전년도 1월 ~ 12월 비용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료, 적화장·재활용 선별장고, 각종대행료등

㉒ 연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 매립지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㉓ 부피환산계수 : 무게단위(톤)을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 환경부 폐정 67501-696 ('94. 9. 8)호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93쪽의 폐기물학회 보고서 '93. 1)

② 수수료 자립도(0.55 ~ 1)

○ 연도별 자립도 제고목표

년 도	1999	2000	2001	2002
자립도	55%	70%	85%	100%

○ 봉투수수료 자립도 산정방식

생활폐기물 처리비용(A)		봉투판매 금 액 (B)	봉투판매 총 용 량 (C)	봉투수수료 자 립 도 (B/A, %)	톤 당 처리비용 (A/C)
직 영	위 탁				
		55%	70%	85%	100%

※봉투판매총용량 = 연간 판매된 봉투의 총용량

③ 판매수수료 = 봉투단가(ℓ) × 수수료자립도 × 봉투규격(ℓ) × 0.09

④ 봉투제작비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2. 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2005. 1. 3 개정 조례 제450호)

구 분	2ℓ (음식물 쓰레기)	3ℓ (음식물 쓰레기)	5ℓ (일반, 음식물쓰 레기)	10ℓ (일반,음식 물쓰레기)	20ℓ (일반,쓰 레기)	30ℓ (음식물 쓰레기)	50ℓ (일반 쓰레기)	100ℓ (일반 쓰레기)
봉투가격	70원	100원	160원	310원	620원	940원	1,540원	3,070원
판매수수료	5원	7원	12원	25원	49원	73원	123원	245원

종량제봉투 가격 및 산정기준(제17조 관련)

〈 가정사업계용봉투 〉

(단위: 원)

①용량 (ℓ)	②ℓ 당 처리비	③처리비 ①×②	④운 반 비		⑤ 제작비	⑥봉투가격 ③+④+⑤	⑦판매가격 (원단위절삭)
			고정비	변동비			
60	54	3,240	480.96	9.36	150	3,880.32	3,880
125	54	6,750	1,002	19.50	300	8,071.50	8,07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2011. 6.30)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제정시 오기된 용어를 정정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구역 변경 제11조 제1항중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 를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 로 변경 ○ 용어의 정정 “전통상업보전구역” 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변경 ○ 유효기간 변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1.6.30)시 유효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을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1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목, 제11조 제목,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 제목 및 본문, 제13조 제목 및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전통상업보전구역” 을 각각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 를 “1,000미터” 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전” 을 “보존” 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를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p> <p>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①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u>500미터</u> 이내의 범위에서 <u>전통상업보전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u>전통상업보전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전통상업보전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p> <p>1. <u>전통상업보전구역</u>의 범위·위치 및 면적</p> <p>2. <u>전통상업보전구역</u>의 지정·변경 목적</p> <p>3. <u>전통상업보전구역</u>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p> <p>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u>보전</u>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u>전통상업보전구역</u>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p> <p>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u>1,000미터</u>----- -----<u>전통상업보존구역</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u>전통상업보존구역</u>----- ----- ----- -----.</p> <p>③-----<u>전통상업보존구역</u>----- ----- -----</p> <p>1. <u>전통상업보존구역</u>-----</p> <p>2. <u>전통상업보존구역</u>-----</p> <p>3. <u>전통상업보존구역</u>----- -----</p> <p>4. ----- --<u>보존</u>----- -----</p> <p>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 ----- <u>전통상업보존구역</u>-----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제13조(전통산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등)구 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u>전통산업보 전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p> <p>제14조(전통산업지구의 <u>보전</u>활동 및 지원) ①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u>보전</u> 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 원을 할 수 있다.</p> <p>제15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①제11조 에 따른 지정된 <u>전통산업보전구역</u> 안에 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692호)</p> <p>제2조(유효기간)제2조 제3호,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u>효력을 가진다.</u></p>	<p>제13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 - -----<u>전통산업보 존구역</u>----- ----- -----.</p> <p>제14조(전통산업지구의 <u>보존</u>활동 및 지원) ①-----<u>보존</u>----- ----- -----.</p> <p>제15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①----- -----<u>전통산업보존구역</u>-----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692호)</p> <p>제2조(유효기간)----- ----- ----- ----- ----- <u>규 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 진다.</u></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통장 연임제한을 통해 통장 조직의 경쟁력 확보 및 우수 통장의 위촉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으로 변경 ○ 통장의 연령제한 규정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이상 60세 이하” 에서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 로 변경 ○ 통장의 연임 규정에 대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임제한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3회로 제한 ○ 통장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 부재 관련 단서조항 신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1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평가순위 하위 10%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통장 임기만료 후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前任) 통장이 재임(再任)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상한연령을 만60세 이하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 -----.</p>
<p>제5조(통·반의 위촉 및 해촉)②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p> <p>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p>	<p>제5조(통·반의 위촉 및 해촉)② (현행과 같음)</p> <p>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u>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자</u>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p>
<p>3. <u>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통장의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평가순위가 하위 10%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u>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통장 연임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평가순위 하위 10%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p>4.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우수반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4.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5. 통장 임기만료 후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前任) 통장이 재임(再任)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6.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201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I. 201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1.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4-4번지 외 21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또는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1. 9. 30 ~ 11. 1
2. 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구 세무과에 제출
 - 인터넷접수 : <http://etax.incheon.go.kr>에서 작성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 (☎810-7976~7)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소3-2호선,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810-7492) 및 도시경관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변경사유 : 편입 토지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변경
2. 사업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8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소3-2호선, 주차장)
 - 명 칭 : 옥련동 567-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공사명	면적(m ²)			기점	비고
	주차장	도로(소3-2)	계		
옥련동 567-28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81	371	2,352	옥련동 567-28번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2010. 11.
- 준공(예정)일 : 2011.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필지수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지구내(㎡)	지구외(㎡)	소유자	비고
1	옥련동	567-30	임	423	355.0		박봉자	당초
		567-36	임	355	355		연수구	변경
2	옥련동	567-31	임	423	222.0		박봉자	당초
		567-37	임	222	222		연수구	변경
3	옥련동	567-29	임	420	420.0		박봉자	변경없음
4	옥련동	567-28	임	423	406.0		박봉자	당초
		567-34	임	82	82		연수구	변경
		567-35	임	324	324		연수구	변경
5	동춘동	산14-174	임	351	351.0		연수구	변경없음
6	동춘동	806-81	임	309	309.0		연수구	변경없음
7	동춘동	806-82	임	18	18.0		연수구	변경없음
8	동춘동	806-78	도	271	271.0		연수구	변경없음
계					2,352			

8. 열람·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9.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1-708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용(2011.08.24시행)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구분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비율	91%이내	8.5%이내	0.5%이내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지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5%이내	22.5%이내	32%이내	29.5%이내	7.5%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율	8%이내	38%이내	44%이내	10%이상

○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안 별표3)

직 급	정 원		
	현정원	조정정원	증감
총정원	603	603	-
구청장	1	1	-
일반직계	534	550	16
4급이상	5	5	-
5급	42	42	-
6급이하	487	503	16
기능직계	68	52	△16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041, FAX 810-706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 일반직 : 87%이상 ⇒ 91% 이상
 - 기능직 : 12%이내 ⇒ 8.5% 이내
 - 정무직 : 1%이내 ⇒ 0.5% 이내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 일반직공무원
 - ▶ 5급 : 8% 이내 ⇒ 7.5 % 이내
 - ▶ 6급 : 23% 이내 ⇒ 22.5 % 이내
 - ▶ 8급 : 28% 이내 ⇒ 29.5 % 이내
 - ▶ 9급 : 8% 이상 ⇒ 7.5 % 이상
 - 기능직공무원
 - ▶ 6급 : 7% 이내 ⇒ 8 % 이내
 - ▶ 7급 : 31% 이내 ⇒ 38 % 이내
 - ▶ 8급 : 52% 이내 ⇒ 44 % 이내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 일반직공무원

▶ 총 계 : 534명 ⇒ 550명

▶ 6급이하 : 487명 ⇒ 503명

- 기능직공무원

▶ 총 계 : 68명 ⇒ 52명

▶ 6급이하 : 68명 ⇒ 52명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1.9.30 ~ 10.5 (6일간)

○ 예산조치 : 약 80,000천원(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 관계법령 (붙임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서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급 5명과 8급11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한 증원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미 전환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비율	91%이내	8.5%이내	0.5%이내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5%이내	22.5%이내	32%이내	29.5%이내	7.5%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율	8%이내	38%이내	44%이내	10%이상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총계	603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550					
3급	1	1				
4급	4	3		1		
5급	42	22	3	5	1	11
6급이하	503					
기능직계	52					
6급이하	52					